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722
------------	------

2025년 6월 1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기덕 의원 외 14명

나. 제안일자 : 2025년 5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기덕 의원)

가. 제안이유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고작 793건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정 사례는 불과 1건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차량 결함 증명을 통한 인정은 물론, 실질적인 입증조차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 규정과, 급발진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구축, 그리고 기록장치 기록 데이터 기반의 급발진의심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호)
- 급발진의심사고 통계 구축 및 공개에 대한 조항 신설함 (안 제4조 제2항)
- 기록장치 시범·분석은 물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조항 신설함 (안 제7조제2항)
-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 등 자문 및 예산 지원 조항 규정 (안 제9조)
- 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조항 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6. 8. ~ 6. 12.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 및 정책수립을 위해 동 조례 개정안을 수용하고자 함

1) 교통운영과-8166(2025.6.9.)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시장이 급발진 의심 사고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피해자” 정의 신설 관련(안 제2조제3호)

- 동 개정안 제2조(정의)제3호는 “피해자”를 “급발진 의심사고로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임
- 동 조례의 제정목적이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8조²⁾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제8조(피해자 지원)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법률상담 2.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급발진 의심사고 지원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의 경우³⁾ 피해자를 운전자와 유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시 그 유족”으로 정의하고 있어 운전자 외에도 동승자를 비롯하여 사고 차량으로 인해 사상자까지 피해자로 볼 수 있어 지원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는 바, 향후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급발진의심사고 통계 구축, 기록장치 데이터 활용 관련(안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 안 제4조제2항과 제7조제2항은 시장이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통계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공용차량에 설치된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것임
- 시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공용차량에 설치된 기록장치 데이터를 공개·활용하는 것은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지역별 관련 조례 현황

연번	‘16말	피해자 정의(2곳)
1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7.18.)	-
2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9.)	-
3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 (2023.12.29.)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운전자 사망시 그 유족
4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3.07.)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본인 또는 그 유족
5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4.04.)	-
6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025.05.15.)	-

- 한편, 현재 급발진 의심사고 통계자료는 지자체가 아닌 사고 발생 후 차량을 분석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료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지역별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공용차량에 설치된 기록장치가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실태조사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자료 협의가 진행되는 등 동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전문가 활용,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관련(안 제9조, 제10조)

- 안 제9조와 제10조는 시장이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해 전문가·단체 등에 자문을 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임
-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 확인은 EDR(Event Data Recorder)⁵⁾이라 불리는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정책 수립시 기술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4) 보도자료, 5년치 '급발진 의심사고' 분석해봤더니... '깜짝 결과'(스카이에일리, 2024.7.10.)

11일 국과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보도자료, 노인 차량만 급발진? 10년간 신고자 통계 보니 '반전'(서울신문, 2024.7.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50대 이하 운전자들에 의해 신고된 것

5) 기고문, 글로벌 이코노믹[자동차 이야기], 2020년 3월 12일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에어백 제어모듈(ACM)이나 엔진 제어모듈(PCM)에 내장된 일종의 데이터 기록용 블랙박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고 영상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사고 전 일정 시간 동안의 주행 속도, 엔진 회전수, 가속페달 변위, 스톱 밸브 변위, 제동 스위치 ON/OFF, 조향핸들 각도 등의 운행 정보와 충돌 시의 속도 변화(delta_v), 가속도(acceleration), 전복 각도(rollover angle), 에어백 전개 정보 등의 데이터가 기록된다.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
라 학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므로 이를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2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5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김원태, 김춘곤, 박강산,
박승진, 송재혁, 아이수루,
, 오금란, 유정희, 윤기섭,
이상욱,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종국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고작 793건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정 사례는 불과 1건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차량 결함 증명을 통한 인정은 물론, 실질적인 입증조차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 규정과, 급발진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구축, 그리고 기록장치 기록 데이터 기반의 급발진의 심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호)
- 나. 급발진의심사고 통계 구축 및 공개에 대한 조항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 다. 기록장치 시범·분석은 물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조항 신설함 (안 제7조제2항)
- 라.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 등 자문 및 예산 지원 조항 규정 (안 제9조)
- 마. 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조항 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해자”란 급발진의심사고로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발진의심사고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기록장치 시범·부착)”을 “(기록장치 시범·부착 및 데이터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피해자”란 <u>급발진의심사고로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u>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실태조사) (생 략) <u><신 설></u>	제4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급발진의심사고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u>
제7조(<u>기록장치 시범 · 부착</u>) (생 략) <u><신 설></u>	제7조(<u>기록장치 시범 · 부착 및 데이터 분석</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u>급발진의심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 ①</u> 시장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u><신 설></u> <u>제10조(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u>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u>제9조</u> (생 략)	<u>제11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당지급 대상 및 범위(자문에 응한 전문가·법인·단체 등), 지급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